東洋學 第70輯(2018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駐朝鮮) 청진영사관 개관을 둘러싼 중·일(中日) 간의 교섭*

李 殷 祥**

▌국문초록▐

이 글은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駐朝鮮) 청진영사관 신설 과정과 그 이후 중·일 간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청진영사관은 식민지 조선북부 함경북도를 관할 구역으로 1930년 6월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청진영사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국 간 영사관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협상이 계속되었다. 이 글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조선 영사관 조직 변화의 관점에서, 청진영사관 신설은 인천영사관 철폐와 연관되었다. 중화민국정부는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청진에 영사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군의 의견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청진영사상 신설을 군사상의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요녕성(遼寧省) 모아산(帽兒山, 곧 臨江)과 조남(洮南),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 3곳 영사관 개관을 교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정부의 재외 영사관 설치 과정에서, 청진영사관 설립은 대만영사관 개관과 관련되었다. 북양정부(北洋政府)는 대만영사관 설치를 위해 일본과 교섭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는 앞서 언급한 3곳 영사관 설치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대만의 대북(臺北)과 대남(臺南) 그리고 조선의 청진 개관을 주장하였다. 결국 1930년 말 대만영사관 문제는 중국이 정주의 일본영사관 개관을 승인하면서 해결되었지만, 청진영사관 문제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만주국의 성립은 청진영사관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교섭에 영향을 미쳤다. 모아산, 조남이 만주국 경내로 포함되면서 일본영사관 신설은 불필요해졌다. 일본은 또 다른 교환조건으로 강소성 해주(海州)의 영사관 개관을 요구하면서 청진 개관 승인을 미루었다. 또한 만주국이 청진에 영사관을 개설하려는 요청을 불허하였는데, 그 요청을 승인하면 제3국의 영사관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935년 이후 중일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조선군의 반대를 이유로 영사관 승인을 거부하였다. 6년 여 끌어온 청진 현안은 중일 양국의 외교 교섭이 아니라 조선군의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주제어] 주조선(駐朝鮮) 중국청진영사관, 주조선 중국인천영사관, 주대만(駐臺灣) 중국대북(臺北)영사관, 모아산(帽兒山, 마오얼산), 조남(洮南, 타오난), 정주(鄭州, 정저우), 만주국, 중화민국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2276).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 eunha@pusan.ac.kr

| 목 차 |

Ⅰ. 서 론
Ⅱ. 주조선(駐朝鮮) 영사관 조직 변화와 청진영사관 설립 과정
Ⅲ. 청진영사관 설립과 대만영사관 개관 관계
Ⅳ. 만주국 성립 이후 중·일 간의 교섭
Ⅴ. 결 론

Ⅰ. 서 론

중화민국정부는 식민지조선에 총영사를 파견하여 화교를 보호하고 통상 및 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조(淸朝) 말기와 마찬가지로 한성에 조선총영사관을 두고 인천과 부산 및 신의주에 영사관, 진남포와 원산에 부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청진영사관은 함경북도를 관할 구역으로 1930년 6월 설립되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일본은 청진영사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중화민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파견한 영사관원이 실질적으로 관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형식적인 승인만이 남은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양국 간 오랜 기간 협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1936년 7월 소위 조선군의 청진영사관 습격 사건이후 마무리되었다.

청진 사건은 1936년 7월 16일 오전 3시 조선군이 무력으로 영사관에 침입하여 수습영사 손병건(孫秉乾)을 비롯한 외교관원과 그 가속 및 관련자 31명을 군사첩보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다.[1] 당일 오전 10시 조선군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군사상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청진 구(舊)러시아영사관청 내에 거주하면서 비합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군사첩보 수집에 종사한 중국인 손병건과 그 일당을 군대와 경찰의 협력으로 철저하게 탄압하였다……청진은 북선(北鮮. 조선북부지역) 3항의 하나로 경제적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숙지하는 바이고 일본, 만주, 소련 국경 방면에서 군사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방 경제상의 요충지에서 개인 외국인이 전술한 군사첩보를 수집하여 우리의 독립권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국가 자위권을 발동한 것"[2]이라고 하였다. 조선군은 성명서에서 손병건을 '청진영사관 거주 영사관원'이 아니라 '청진 구러시아영사관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청진영사 마영발(馬永發)은 원산부영사를 겸임하여 원산부영사관에 상주하였다. 따라서 수습영사 손병건이 사실상 영사의 직분을 집행하였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생으로 일본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이었다. 주사 양전표(楊殿鏢) 역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 출신으로 주일공사관 서기(書記)로 취임하였고 원산부영사관을 거쳐 청진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통역 겸 서기 진기수(陳其洙), 주사

1) 조선총독부경무국장 → 경보국장·경시총감 外, 朝保祕 第245號, 1936.07.24,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CJA0002343), 조선총독부외사과문서, 한국국가기록원 소장, 87~90쪽.
2) "朝鮮軍聲明書", 1936.07.16.,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 13쪽.

이영서(李映西), 학습원(學習員) 예위정(倪尉庭)도 중화민국 외교부가 파견한 관원이다. 손병건 이하 양전표, 진기수, 이영서, 예위정은 모두 군사첩보 수집 혐의로 체포되었다.[3)]

일본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화민국정부가 설치한 영사관을 습격하여 외교관원을 체포한 이 대단한 사건에 대해, 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조선총독부외사과문서를 조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4)] 이후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에서 외교부당안(外交部檔案)을 검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찾을 수 있었다.[5)] 외사과문서가 청진 사건에 관한 일본측 자료라면, 외교부당안은 중국측 자료이다.

그런데 필자가 관심을 갖기 이전, 진군원(陳群元, 천췬위안)은 앞의 두 문건을 분석하여 이 사건의 처리와 교섭 과정을 서술하였다.[6)] 그의 논문은 청진 사건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연구성과이다. 청진 사건은 청진영사관을 둘러싼 중일 양국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외교관원의 석방을 위해 일본이 제시한 영사관 폐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7)] 반면 진군원의 논문은 청진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청진영사관 승인을 둘러싼 중일 간의 교섭과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청진영사관 개관을 둘러싼 중일 간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1929년 8월부터 시작되는데 이후 논의 과정에서 흥미로운 두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청진영사관 설립이 대만영사관 개관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만주국 성립이 일본 외교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이 글은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하나는 주조선(駐朝鮮) 영사관 조직 변화, 더 나아가 중화민국정부의 재외 영사관 설치 과정 속에서 청진영사관 개설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만주국 성립 이후 중일 간의 교섭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청진영사관 개관 문제가 조선군과 일본외교당국과의 관계, 그리고 만주국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작성을 위해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문건,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 소장 외교부당안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8)]

---

3) 손병건은 1933년 12월, 양전표는 1932년 11월부터 근무하였다. 진기수는 일본 나가사키 출생으로 귀국 후 상업에 종사하다가 원산부영사관 통역을 시작으로 각 영사관을 거쳐 1930년 6월에 부임하였다. 이영서는 안휘성립중학교(安徽省立中學校) 졸업 후 중화민국 외교부 서기를 역임하고 1934년 10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위정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지만 1935년 8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淸津之密諜事件 今日移送檢事局 朝鮮軍司令部發表"(同盟社7月25日通迅稿譯件), 1936.07.25.,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11-01-03-05-01-023),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186~188쪽.

4) 주1에서 언급한 조선총독부외사과문서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를 말한다.

5) 주3에서 언급한 외교부당안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를 말한다.

6) 陳群元, 「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1), 『政治經濟史學』 506,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2008, 1~17쪽; 陳群元, 「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2), 『政治經濟史學』 510, 2009, 17~28쪽; 陳群元, 「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3), 『政治經濟史學』 511. 2009, 25~41쪽. 陳群元의 연구성과를 소개해 준 인천대 이정희 교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7) 이 사건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영사관원 손병건, 양전표, 진기수, 이영서, 예위정 외에 고용인 석홍기(石鴻基) 그리고 일반인으로 이발점 점주 이원홍(李源洪) 등 7명이 군기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결국 중일 간의 교섭으로 손병건 등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뒤 귀국 조치되었고 청진영사관은 폐쇄되었다. 陳群元, 위의 논문(3), 2009, 26~36쪽.

Ⅱ. 주조선(駐朝鮮) 영사관 조직 변화와 청진영사관 설립 과정

1. 영사관 조직 변화

청조는 한청통상조약(1899)에 의거하여 대한제국에 공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였으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주한공사관을 총영사관으로 개조하고 주일공사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인천과 부산에 영사관, 증남포(이후 진남포)와 원산에 부영사관은 이전대로 유지하였고, 신의주에 영사관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총영사 체제는 중화민국에 들어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중화민국정부는 한성에 조선총영사관을 두고 인천과 부산 및 신의주에는 영사관, 진남포와 원산에는 부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영사관 조직에 변화가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1927년 5월이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영사관 경비의 부족을 이유로 원산, 진남포부영사관의 관무를 잠시 정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중화상회 등은 영사관 철폐 보류를 조선총영사 왕수선(王守善)과 본국 외교부에 요청하였고 외교부는 원산부영사관의 상황을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

진남포부영사관의 소식을 듣고 진남포중화상회 등에서도 관무 정지 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10월에 이르러 외교부는, 원산부영사관의 관무는 이전대로 수행하여 영사관원의 봉급은 지급하지만, 그 외 공비(公費)는 국가 재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관내(管內) 교민이 부담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진남포부영사관은 철폐하고 총영사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진남포부영사관은 총영사관 휘하의 진남포판사처(鎭南浦辦事處, 출장소)로 개조되었다.

그러면 원산부영사관은 유지되고 진남포부영사관은 판사처로 개조된 연유는 무엇일까. 원산부영사 마영발(馬永發)과 관내 중화상회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 마영발은 청말 1909년부터 원산부영사로 재직하였고, 수습영사 양우(楊佑) 역시 1909년부터 원산부영사관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다.[9] 반면 진남포부영사 합한경(哈漢京)은 관내 교민에게 신망을 얻지 못해 진남포중화상회는 영사관 존속 운동을 꺼려했다.[10] 결국 부영사관과 관내 중화상회와의 관계에서 부영사관 존폐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8) 주4, 주5의 문건 외에,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M-1-5-0-3-8-001)은 1927~1934년까지 청진영사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 소장「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2)(11-29-01-02-285)은 1928~1936년까지 청진영사관 문제가 포함되었다.「日本在華設領事」(11-29-01-02-081)는 1930~1937년까지 중국 주재 일본영사관 설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劃定駐日本・朝鮮(韓國)各領館轄區範圍案」(11-29-01-02-269)은 1930~1932년까지 조선 주재 영사관 관할 범위에 관한 기록이다. 그 외『駐朝鮮使館檔』(타이완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 소장)에 수록되어 있는「使館人事案」(1915) (03-47-029-01),「各館人事」(1930)(03-47-194-03),「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1930)(03-47-194-05) 및 조선총독부 외사과문서 중「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 CJA0002323) 등을 참고하였다.

9) 이은자,「중화민국 전기(1912~1927) 주조선 영사관 조직 - 인적 구성의 측면을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66,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5, 23~26쪽.

10) 그러나 부영사관 폐쇄 후 관원이 귀국하자 영사관 소요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본국 외교부에 영사관 설치를 탄원하는 동시에 기존 수습영사 진택관(陳澤寬)을 부영사로 맞이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경무국장→내각척식국장 外, 1927.06.25., 朝保祕 第1400號,「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20~422쪽.

두 번째로 영사관 조직에 변화를 가져온 시점은 1930년 6월이다. 중화민국정부는 6월 1일자로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청진에 영사관을 신설하였다. 이 논의는 이보다 앞서 1929년 8월 8일자 주일공사 왕영보(汪榮寶)가 일본외무대신에게 보낸 서한에서 촉발되었다. 왕영보는 여기에서 교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관할 사무는 총영사관이 병합 처리하며 별도로 청진에 영사관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11]

중국측의 요청에 대해 일본측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우선, 청진영사관 설치에 관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1929년) 10월 29일자 문건에서 척무차관에게 조선군의 의견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전달하였다. 첫째, 청진에 중국영사관 설치는 군사상 견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청진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있는 함경북도 웅기와 가깝고 북선 방면 항만으로 군사상 중요하며, 장래 길회철도(吉會鐵道, 중국의 길림(吉林)과 조선의 회령을 연결하는 철도)가 완성되어 청진이 종단항이 되면(이미 청진과 회령 간에는 청회철도가 부설되었다)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외교 관계상 청진에 중국영사관 설립이 불가피하면 조선군은 국경 방위의 견지에서 "종래의 현안인 요녕성(遼寧省) 모아산(帽兒山) 영사분관(分館) 설치를 주장해야 한다."[12]

여기서 조선군은 청진영사관 신설을 국방상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외교 관계에서 청진영사관 설치를 해야 하면 교환조건으로 모아산에 영사분관을 개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군의 견해는 척무차관을 통해 그 다음해 1930년 1월 11일자 외무차관에게 재차 전달되었다.[13] 일본측은 청진영사관 설립과 관련한 조선군의 견해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중국측과 교섭하였다.

1930년 2월 21일자 문건에서 외무대신은 주일공사 왕영보에게, 중국영사관 신설에 대해 일본측은 "주의상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종래 요녕성 모아산 일본영사관 분관 설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유감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요녕성 조남(洮南),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가 교통의 요지로 일본상인과 여객이 많아 번영을 누리면서도 영사관이 없어 불편하니, 모아산 영사분관 외에 조남과 정주영사관 개설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4]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 임시대리공사 강홍걸(江洪杰)은 일본외무대신에게 5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내 다음 두가지 사실을 통보하였다. 첫째, 본국 외교부 명에 따라 인천영사관을 폐쇄하고 관무는 총영사관에서 처리하며 인천영사 황승수(黃承壽)를 외교부로 발령하였다. 둘째, 청진에 영사관을 첨설하여 원산부영사 마영발(馬永發)을 (서리) 청진영사로 승진 임명하였다.[15] 그런데 원산부영사 마영발이 청진영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측은 5월 19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 5월 14일 척무차관은 외무차관에게 마영발이 청진영사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청진영사관 신설 건과 관련한 경과보고를 요청하였다.[16] 외무차관은 (5월 22일) 회신하여, 청진영사관 신설에 관해 금년 2월까지 중국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중국측이 아무런

11) 중화민국특명전권공사→일본외무대신, 1929.08.08.,「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35쪽.
12) 조선총독부정무총감→척무차관, 1929.10.29., 官祕 第42號,「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37~438쪽.
13) 척무차관→외무차관, 1930.01.11., 管1 第409號,「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39~441쪽.
14) 외무대신→支那國公使, 1930.02.21., 通1 普通 第18號,「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42~443쪽.
15) 중화민국임시대리공사→일본외무대신, 1930.05.19.,「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68~469쪽.
16) 척무차관→외무차관, 1930.05.14., 朝1 第1532號,「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72~473쪽.

회답이 없다가 갑자기 청진영사 임명 사실을 알렸다고 곤혹스러워하였다.[17]

5월 19일자 중국측의 공문에 대해 외무대신은 5월 22일자로 주일 임시대리공사 강홍걸에게, 중국측이 청진영사관 신설의 뜻을 통보하였으므로, 모아산(그리고 조남, 정주) 일본영사관 개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착수하겠다고 회답하였다.[18] 모아산, 조남, 정주 3곳 영사관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총영사 장유성(張維城)은 외사과장에게, 본국 외교부의 명에 따라 5월 30일자로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총영사관이 업무를 병합 처리함을 통보하였다. 더 나아가 8월 말에는 총영사관 주사 장문학(蔣文鶴)을 판사처 주임(主任)으로 임명하여 9월 1일부터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알렸다.[19]

인천영사관을 5월 30일자로 폐쇄한 조치는 6월 1일 청진영사관 설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여 정무총감은 척무차관에게 인천판사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20] 이에 외사과장은 인천판사처 설립과 관련하여 외무대신의 공식적인 통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았지만, 주일공사 왕영보는 인천영사관을 철폐하고 그 사무는 총영사관이 관할한다는 공문을 이미 외무대신에게 보냈기 때문에, 공식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영보는 외무대신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재차 통보하였고, 외사과장은 외무대신의 회신을 받은 후에야 인천판사처가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장유성에게 알렸다.[22]

2. 중국측의 청진영사관 설립 강행

조선북부 함경북도에 위치한 청진항은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중시되었다. 1914년 한성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철도가 완성되자, 함경남북도를 종단하여 원산에서 회령까지 이어지는 함경선 부설이 시작되었다. 함경선은 청진과 회령 간, 청진과 나남 간 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1928년 완성되었다. 일찍이 일본은 중국 길림(吉林)에서 조선의 회령을 연결하는 길회철도를 구상하여 함경선과 연결하고자 했다. 청진과 회령 간 청회철도는 이미 함경선의 일부로 개통되었다(1917). 길회철도의 조선측 종단이 청진으로 결정되면 중국과 조선을 연결하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청진의 위상은 더욱 배가될 것이었다.[23] 앞서 조선군이 청진영사관 설

17) 외무차관 → 척무차관, 1930.05.22., 亞1 第285號, 「淸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79~483쪽.
18) 외무대신 → 지나공화국임시대리공사, 1930.05.22., 亞1 普通 第60號,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 234~235쪽.
19) 조선총영사 → 조선총독부외사과장, 1930.05.30.,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 12쪽; 조선총독부외사과장 → 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 1930.09.11.,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 44쪽.
20) 정무총감 → 척무차관, 1930.09.03., 「各國領事館往復」, 1363~1369쪽.
21) 조선총독부외사과장 → 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 1930.09.15,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 46쪽; 중화민국특명전권공사 → 일본외무대신, 1930.10.07., 「各國領事館往復」, 1340~1341쪽.
22) 주일본공사관 → 주조선총영사관, 1930.11.03.,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 49~51쪽; 조선총독부외사과장 → 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 1930.11.07.,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 54쪽. 인천판사처 설치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교섭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강진아, 「만주사변 전후 재한화교 문제의 양상 - 조선총독부외사과와 재한 중국영사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동양사학회, 2012, 269~273쪽.
23) 이은상, 「중일전쟁 이전 시기(1912~1936) 조선의 원산화교」, 『인문과학』 60,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6, 109~110쪽; 김지환, 「간도협약과 일본의 길회철도 부설」, 『중국사연구』 34, 중국사학회, 2005, 262~267쪽; 송규진, 「함경선 부설과 길회

립에 반대한 연유는 길회철도가 완공될 경우 청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진의 중요성은 일본 뿐 아니라 중국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다. 청진영사관 설립에 관한 관심은 이미 1915년 말부터 보인다. 조선총영사 부사영(富士英)은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서, 청진은 회령과의 거리가 가까워 청진과 회령 간 철도가 개설되고, 향후 중국 길림과 회령 간 철도가 완공되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진은 원산부영사관 관할이지만 원산과 거리가 멀고 국방상 중요하므로 원산부영사관을 청진으로 이전해줄 것을 일본외무대신과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24]

1928년 10월 1일 함경북도 나남에서 함경선 전선 개통 축하식이 거행되었을 때 당시 조선총영사 왕수선과 원산부영사 마영발이 같이 참여하였다. 이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원산부영사관의 관할 범위는 함경남북도, 강원도이면서, 중국의 간도 방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진에 영사분관을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청진화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영사분관이 필요함을 통감하고, 본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영사관 개설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25]

실제로 청진의 부상은 화교의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청진화교는 1911년 52명으로 시작하여 1920년 236명, 1925년 1,073명, 1930년 1,348명으로 급증하여, 1925년 이후 원산부영사관 관내(함경남북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화교가 거주하였다.[26] 1929년 9월 청진중화상회 역시 길회철도의 부설에 따른 청진의 중요성과 화교수의 증가 등을 이유로 영사관 설치를 요청하였다.[27]

중화민국 외교부는 1930년 4월 주례각(周禮恪)을 서리 수습영사, 장의신(張義信)을 서리 주사(통역 겸임)로 임명하고, 이어 마영발을 서리 영사로 승진 임명한다는 내용을 조선총영사 장유성에게 알렸다. 마영발은 이들 관원을 이끌고 6월 1일 청진에 도착하여 영사관(구러시아영사관을 임대하여 사용함)에서 관무를 개시하였다.[28] 영사관의 대인(大印)에는 '중화민국주청진영사관인(中華民國駐淸津領事館印)', 소장(小章)에는 '중화민국주청진영사(中華民國駐淸津領事)'라는 글자를 새겼다.[29] 마영발은 원산부영사 재직 때부터 청진영사관 설치를 주장한 인물로, 향후 청진영사관 승인 문제에 대해 본국 외교부를 통해 일본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요청하였다.

한편 청진영사관 신설과 영사의 행동에 대해 일본측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함경북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 등에게 보낸 6월 6일자 청진영사의 행동에 관한 건에서는, 마영발이 영사관 개설 준비를 위해 청진에 도

선 종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나진, 웅기, 청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7, 한국사학회, 2014, 328~335쪽.

24) 주조선총영사→외교부장, 1915.11.15. 「使館人事案」, 139~141쪽.

25) "淸津ニ中華民國領事館設置ニ関スル經緯"(작성자, 날짜 불명),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 221쪽.

26) 화교수는 1924년 청진부 643명, 원산부 757명으로 원산부가 많았다. 그러나 1925년에 이르면 청진부는 1,073명을 돌파한 반면, 원산부는 768명으로 거의 증감이 없었다. 이후 청진부 화교 규모는 원산부영사관 관내 최고였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11, 47쪽;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 58쪽;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4, 55쪽;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33~35쪽;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0, 30쪽.

27) 청진중화상회 外→외교부장, 1929.09.29.,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 93~100쪽.

28) 외교부장→주조선총영사, 1930.04.24., 「各館人事」, 3~4쪽; 署駐淸津領事→주조선총영사, 1930.06.03., 「各館人事」, 20쪽.

29) 署駐淸津領事→주조선총영사, 1930.07.01., 「各館人事」, 21~22쪽.

착한 상황, 영사관 청사, 영사관원 등의 상황을 전하였다.[30] 6월 30일자 청진영사의 언동에 관한 건에서는, 마영발이 청진화교에게 주일공사관의 노력으로 7월 1일 정식 개관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는 내용을 알렸다.[31] 7월 11일 함경북도지사의 동향 보고에 따르면, 청진중화상회 회장 임매오(林梅五) 외 11명이 마영발 영사 일행을 부내 신암동 화교음식점 동승루(東昇樓)에 초대하여 회담하면서 필사의 노력으로 개관 촉진 청원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32]

청진영사관이 개설되었지만 일본이 청진영사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의 직무는 순조롭지 않았다. 마영발은 6월 21일 외교부에, 조선총독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 대외적으로 관무를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33] 이에 주일공사 왕영보는 일본 아세아국장(亞細亞局長)을 만나 조선총독부가 청진영사의 직무 집행을 인정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알선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아세아국장은 일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지방관헌에게 영사의 직무 집행을 인정하는 훈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4]

마영발은 조선총영사 장유성에게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35] 장유성은 마영발의 요청에 따라 7월 22일 외교부에, 함경북도 교민이 조선인에게 구타, 사상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조선총독부가 청진영사를 인정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관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알렸다.[36]

원래 중화민국 외교부는 청진영사관 설치를 결정하고 6월 13일 훈령에서 원산부영사관은 함경남도와 강원도, 청진영사관은 함경북도를 관할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청진영사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진영사관이 공식적으로 함경북도 화교의 교섭 업무를 시행할 수 없었다. 7월 22일자 조선총영사 장유성이 외교부에 보낸 문건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8월 5일자 훈령에서, 영사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경북도 관내에서 화교의 교섭 안건이 발생하면 임시로 원산부영사관에서 협력하여 처리하되, 대외적으로는 알리지 말도록 했다. 이 훈령은 원산부영사 양우(楊佑)에게도 전달되었다.[37]

청진영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 설립과 영사의 활동은 청진화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7월 30일자 함경북도지사가 정무총감에게 보낸 동향 보고에 의하면, 마영발 이하 관원과 그 가족들은 구러시아영사관 일부(4실)를 임대하여 거주하였다. 아울러 청진부 명치정 소재 흥화목창(興和木廠)의 2층을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마영발은 처음 청진에 왔을 당시 7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선전하였다. 계속해서 마영발은 "아직 영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동은 철저하게 억제하였지만", 화교 중에는 "마영발이 청진에 부임한 이후 종래의 태도를 급변하여 조선인에게 오만방자하였다." 일반 조선인 간에는 마영발의 청진 부임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잠재 중에 혹은 부지불식간에 사실상 중국영사

30) 함경북도경찰부장→경무국장 外, 1930.06.06., 咸北 高祕乙 第2535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97~498쪽.
31) 함경북도경찰부장→경무국장 外, 1930.06.30, 咸北 高祕 第2815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07쪽.
32) 함경북도지사→경무국장 外, 1930.07.11., 咸北 高祕乙 第2989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12~513쪽.
33) 署駐淸津領事→외교부장, 1930.06.21.,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135~136쪽.
34) 在南京(上村)領事→외무대신, 1930.07.05.,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87~490쪽; 在南京(上村)領事→외무대신, 1930.07.07.,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91~493쪽.
35) 署駐淸津領事→주조선총영사, 1930.07.17., 「各館人事」, 44~45쪽.
36) 주조선총영사→외교부장, 1930.07.22., 「劃定駐日本・朝鮮(韓國)・各領館轄區範圍案」, 17~18쪽.
37) 외교부장→주조선총영사, 1930.08.05., 「各館人事」, 38~40쪽.

로 대우하는 자"가 있으므로, 마영발의 주재를 용인해서는 안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가 영사로서 한 행동으로, 사망 화교의 검시 입회, 화교와 조선인 간의 갈등 해결, 호구 조사, 본국정부와 주일공사 및 조선총영사 등에게 개관 촉진 전보 요청, 화교와의 교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38]

2개월 뒤 함경북도지사는 정무총감에게, 마영발이 화교 모임에 참석하여 영사관 공식 개설이 임박했음을 선전했다고 보고하였다.[39] 더 나아가 9월 19일자 동향 보고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청진화교는 마영발이 정식 주재하는 영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중국인 상호 간, 혹은 조선인과 중국인 간 민사 안건에 대해 영사관 개관을 기다린 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마영발은 일본과 교섭을 거듭한 결과 형세가 호전되어 10월 1일부터 개관한다고 말했다.[40]

이상에서 마영발은 한편으로는 영사로서 공식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조선총영사와 본국 외교부에 호소하여 일본측과 교섭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립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청진영사관 설립과 대만영사관 개관 관계

제2장에서 조선군은 청진영사관 신설을 국방상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외교 관계에서 불가피하면 교환조건으로 종래의 현안인 모아산 영사분관 설치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모아산 영사분관 설치가 종래의 현안이 된 연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1930년 1월 11일 척무차관이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건은 청진영사관 뿐 아니라 대만의 대북(臺北, 타이베이)과 대남(臺南, 타이난) 중국영사관 신설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된 이후 대만 거주 중국인은 대만화교로 불렸다. 대만영사관 개설은 대만화교의 숙원 사업이었다. 대만의 교무는 형식적으로 주일 고베(神戶)총영사관 관할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대만화교는 이미 3만 명을 넘었다. 대만총독부의 화교에 대한 압박, 대만과 중국에서 계속되는 사회운동에 자극받아 이들은 1923년 중화회관(中華會館)을 조직하였고, 1925년 8월 (대북)중화회관을 중심으로 북양정부(北洋政府)에 영사관 설치를 청원하였다. 이에 북양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당시 일본은 영사관 설치 운동의 이면에 대만화교 민족주의의 고양을 우려하였고, 영사관을 설치할 경우 영사가 치외법권을 향유하게 되어 치안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대만영사관 설치의 교환조건으로 임강(臨江) 곧, 모아산영사관 설치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였다.[41] 그러나 북양정부 정국의 변화로 더 이상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다.

---

38) 함경북도지사→정무총감, 1930.07.30., 咸北 高祕丙 第3371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19~526쪽.
39) 함경북도지사→정무총감, 1930.09.12., 咸北 高祕乙 第3966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27~528쪽.
40) 함경북도지사→정무총감, 1930.09.19., 咸北 高祕乙 第4111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29~532쪽.
41) 許雪姬, 「日據時期的中華民國臺北總領事館, 1931~1937」, 『日據時期臺灣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臺北: 國立臺灣大學歷史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수립 후 대만영사관 문제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 대만화교는 1927년 3월 중화회관을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로 개조한 후 정부에 영사관 설치를 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정부 역시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대만영사관 설치에 적극 나섰다. 국민정부는 원래 대만의 대북, 대중(臺中, 타이중), 대남 3곳에 영사관 설치를 계획하였다. 일본측은 기존의 모아산 외에 조남과 정주 3곳에 영사관 개관을 교환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측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대중영사관을 포기하고 청진영사관 설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인천영사관을 폐쇄하고 청진영사관을 신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음은 물론이다.[42]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대북영사관 설치를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대북에는 이미 미국, 네덜란드 2개국 영사관이 존재하였다. 중일통상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영사관 개관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대북영사관을 승인하면 대남영사관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1930년 2월 21일자 외무대신이 주일공사 왕영보에게 보낸 문건에서 청진은 불허하지만 대만을 허가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대만영사는 대만적민(臺灣籍民)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영사관 설립의 교환조건인 모아산 영사분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모아산과 더불어 조남과 정주영사관 개설을 교환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측이 청진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마영발을 영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일본측에 알린 시점은 1930년 5월 19일이다. 5월 27일에는 일본측의 동의를 거쳐 대북, 대남영사관을 신설하고 대북총영사로 임소남(林紹南)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북총영사 파견은 청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43]

그러면 모아산, 조남영사관 개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당국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외교부는 일본측이 3곳의 영사관 설치를 요구하자, 2월 22일자로 하남성, 요녕성정부에 일본영사관 설치가 필요한지 조사하라는 전보를 보냈다.[44]

요녕성정부는 부정적인 회신을 보냈다. 3월 15일 작성된 요녕성정부의 전보에 의하면, 조남은 자개상부(自開商埠, 중국이 스스로 외국에 개방한 항구)의 하나이지만 아직 개항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외국영사관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모아산의 예전 이름은 임강현(臨江縣)으로, 1926년 일본이 이곳에 영사관을 강제로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강한 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영사관 설치는 허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45]

압록강변의 국경에 위치한 임강은 압록강 건너 평안북도 중강진(中江鎭)과 마주하고 있으며 1902년 현(縣)이 설치되었다. 삼림지대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국경 지역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강현은 조약으로 개방되지 않았고 일본교민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영사관을 개설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국경의 치안을 유지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구실로, 좀 더 넓게 말하자면 '만몽(滿蒙) 적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동(安東)영사관 모아산분관을 설치하고자 했다. 이에 반대하는 '항일'

學系, 1993, 495~500쪽.

42) 許雪姬, 앞의 논문, 500~504쪽.

43) "日支領事館開設交涉", 1930.12.01.(亞細亞局 第1課), 「清津へ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50~451쪽; 463~464쪽.

44) 외교부 → 河南・遼寧省政府, 1930.02.22., 「日本在華設領事」, 2쪽.

45) 遼寧省政府 → 외교부, 1930.03.15, 「日本在華設領事」, 9~11쪽.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모아산분관 설치는 무산되었다.[46] 그러나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청진영사관 설치와 연계하여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요녕성정부가 조남, 모아산 일본영사관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5월 19일자로) 청진영사관 설치와 영사 파견을 공식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측은 (5월 22일자 문건에서) 중국측이 청진영사관 설치를 통보하였으므로, 일본측도 모아산, 조남, 정주 개관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주일공사 왕영보가 5월 22일자 문건을 본국 외교부에 전달하자 외교부는 (6월 4일자로) 조남, 모아산영사관 설치의 可否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47]

일본측도 남경(南京) 주재 영사, 봉천(奉天) 주재 영사를 통해 각각 중화민국 외교부와 봉천당국을 설득하도록 했다. 이하 일본측의 교섭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외교부는 정주 개관은 문제없지만 모아산과 조남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봉천당국은 모아산의 경우 이전에 영사분관 설치를 둘러싼 분규가 진행된 바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남의 경우 개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일본영사관 개관으로 일본영사경찰이 확대되고 일본 낭인이 몽고에서 소란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유로 응낙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측은 중국측에 모아산 개관은 불가능하지만 조남의 경우 봉천당국을 설득해달라고 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진과 대만영사관 승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조남의 경우 봉천당국이 일본영사경찰의 확장, 일본의 동몽고 지역에 대한 야심을 두려워하여 영사관 개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측이 봉천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였다.[48]

한편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조남은 고려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입장 변화가 1930년 12월 5일 주일공사에게 보낸 문건에 보인다.[49] 반면 모아산 불허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만주일보』(滿洲日報)에 모아산영사관 설치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보고 요녕외교협회임강분회(遼寧外交協會臨江分會)는, 일본영사관이 개관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50] 이런 상황에서 모아산 개관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12월 19일 주일공사 왕영보는 외무대신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중국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첫째, 정주의 일본영사관 개관을 승인한다. 둘째, 조남의 경우 국민정부 뿐 아니라 만주의 장학량(蔣學良) 정권과 협의 결과 이의가 없다. 다만 자개상부로 공포는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고,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등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조남의 개관은 잠시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응하여 외무대신은, 일본측은 정주를 중국측은 대북을 우선 개관하고, 청진은 조남이 개관되면 허가하겠다고 말했다.[51] 주일공사 왕영보는 대북영사관 설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청진영사관 개관이 일본의 조남영사관 설립과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일본측의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하였다.[52] 결국 일본이 요구한 3곳 중 정주영사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대만

46) 譚小妮, 「1927年臨江拒日設領鬪爭硏究」, 長春: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6~15쪽.
47) 주일공사→외교부, 1930.06.04., 「日本在華設領事」, 13쪽; 외교부장→주일공사, 1930.06.04., 「日本在華設領事」, 14쪽.
48) "日支領事館開設交涉", 1930.12.01.(亞細亞局 第1課 작성), 「清津へ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452~462쪽.
49) 외교부→주일공사, 1930.12.05., 「日本在華設領事」, 29~30쪽.
50) 遼寧外交協會臨江分會→외교부, 1930.12.22 發電, 「日本在華設領事」, 36쪽.
51) 외무차관→척무차관, 1930.12.24., 亞1 第794號, 「清津へ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35~538쪽.

영사관 설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중일간 교섭 과정에서 정주영사관 개관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문제없이 승인한 것으로 전제하였지만, 정주 지방당국과 민중의 반발은 적지 않았다. 정주는 1922년 3월 개항되었다. 일본측이 대북에는 기존에 네덜란드, 영국영사관이 있고 중일통상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영사관 설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듯이, 중국측 역시 정주영사관 설립을 반대할 근거가 없었다. 국민정부는 1931년 1월 행정원 제11차 국무회의에서 정주 개관에 동의하였다.

정주는 중국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경한철도(京漢鐵道), 롱해철도(隴海鐵道)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하남, 섬서(陝西), 산서(山西) 3성의 면화 집산지였다.[53] 따라서 영사관 개관에 대해 무엇보다 중화면업연합회(中華綿業聯合會)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주 개관은 일본의 면화상인에게 큰 이득을 주게 되어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였다.[54] 하남성정부 역시 정주 개관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하였다.[55] 그러나 외교부는 정주영사관은 대만영사관 설치와 연동되어 있고, 이미 1931년 1월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하였다.[56] 대만영사관 설립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측은 정주 개관을 이의없이 허가했지만 지방당국과 민중의 반발은 거셌다. 정주영사관은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였다.[57]

Ⅳ. 만주국 성립 이후 중·일 간의 교섭

조남 일본영사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교환조건인 청진영사관 승인 문제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만주국 성립 이후 청진영사관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33년 11월 30일 일본 아세아국(亞細亞局)이 작성한 '중국측의 청진영사관 개설 방안 제출 경위와 일본측 방침에 관한 문건'은 중요하다. 이 문서에서는 영사관 개설 경위를 서술한 뒤 일본측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에 청진영사관 설치의 교환 조건으로 일본측이 주장한 재만(在滿) 일본영사관(모아산, 조남영사관) 설치에 관한 건

52) 주일공사→외교부, 1930.12.22 發電,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146쪽.

53) 경한철도(京漢鐵道)는 북경~한구(漢口)선, 롱해철도(隴海鐵道)는 감숙성 난주(蘭州)~강소성 연운항(連運港) 곧 해주(海州)선을 지칭한다. 정주와 철로 교통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宋謙, 「鐵路與鄭州城市的興起(1904~1954)」, 河南: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7~28쪽.

54) 중화면업연합회→ 행정원장·외교부장·실업부장, 1931.01.20. 發電, 「日本在華設領事」, 58~59쪽.

55) 하남성정부주석(劉峙)→외교부장, 1930.01.29., 「日本在華設領事」, 77쪽.

56) 행정원(院長 蔣中正)→외교부, 1931.02.04., 「日本在華設領事」, 79~80쪽; 행정원(院長 蔣中正)→외교부, 1931.02.12., 「日本在華設領事」, 82~83쪽.

57) 정주 일본영사관은 만주사변으로 폐쇄되었다가 1935년 10월 두 번째로 개관되었다. 이 때에도 하남성정부는 영사관 개관을 거부하였다. 1935년 12월 8일 북경에서 항일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영사관 앞에서 항일시위가 계속되자 다시 폐관되었다. 1936년 2월 제3차 개관하여 이름을 정현영사관(鄭縣領事館)으로 바꾸었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1937년 8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馬國福, 「日本特務機關在鄭州的間諜活動(上)」, 『河南法制報』, 2016.01.06., http://newpaper.dahe.cn/jrab/html/2016-01/06/content_1352201.htm?div=-1(검색일 : 2017.09.22.).

은, 만주사변이 발생하고 이어 만주국이 성립함으로써 자연 해소되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청진영사관 개설 문제를 유아무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청진화교수와 통상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산에 더하여 영사관을 설치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중국측에 회답해야 한다.[58]

반면,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마영발(서리청진영사 겸 원산부영사)은 1932년 12월 19일자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서, 일본이 청진영사관 설립을 모아산, 조남 등지의 개관을 조건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지만, 만주사변으로 사실상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승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59]

일본은 중국의 대북영사관과 교환조건으로 정주영사관 개설에 성공하였다. 또한 모아산, 조남이 만주국 경내로 포함되면서 영사관은 불필요해졌다. 그러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측은 청진영사관 개설을 별개의 건으로 주장하였고, 중국측은 모아산, 조남 개관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영사관을 정식 승인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영발은 지속적으로 경성총영사와 본국 외교부에 청진영사관 정식 승인을 요청하였다.[60] 경성총영사 노춘방(盧春方)은 (1933년 7월 31일) 마영발의 청진 교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면서, 이전에 냉담했던 것과는 달리 근래 화교의 의지(義地) 문제 등을 함경북도 지방당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소식을 외교부에 알렸다.[61] 마영발은 더 나아가 11월 30일자 경성총영사에게 보낸 문건에서, 청진 교무에 관해 지방당국과 같이 의논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영사관 설립은 형식상의 해결만 남았을 뿐이라고 하였다.[62]

이처럼 청진영사관 개설이 장기화되고 청진영사 스스로 형식상의 해결만 남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일본측은 또 다른 교환조건을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은 1934년 5월 24일자 아세아국이 작성한 문건에 보인다. 주일공사관 참사관 정소급(丁紹伋)은 아세아국장을 방문하여 청진영사관 개설에 관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장은 일본의 승인 없이 중국이 먼저 청진에 영사를 파견하고 영사관을 개설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같은 중일 양측의 논리였다.

그런데 참사관 정소급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재 청진에는 단순히 영사관 출장소 곧, 판사처를 설치하고 있을 뿐으로, 이 출장소를 철거하고 관원을 귀국시킨 뒤 재차 영사관 개설 방법을 의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아세아국장은 중국에 새로운 영사관 개설을 교환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다.[63]

이 문건에서 청진영사관 조직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은 이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

58) "支那側ノ淸津領事館開設方申出ノ經緯及我方方針ニ関スル件", 1933.11.30.(亞細亞局 第1課 起案), 「淸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82~586쪽.
59) 署駐淸津領事 겸 원산부영사→외교부장, 1932.12.19.,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227~228쪽.
60) 주경성총영사→외교부장, 1933.05.20.,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231~232쪽; 署駐淸津領事 겸 원산부영사→외교부장, 1933.08.05.,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234~236쪽.
61) 주경성총영사→외교부장, 1933.08.18.,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 237~241쪽.
62) 주경성총영사→외교부장, 1934.02.01.,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2), 1~4쪽.
63) "淸津支那領事館開設ノ件ニ関ツ中華民國公使館丁參事官桑島亞細亞局長ヲ來訪ノ件", 1934.05.24.(亞細亞局 第1課), 「淸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87~588쪽.

었다. 1933년 5월 9일자 척무차관이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건에 의하면, 청진영사관 개설 초기에는 본국 외교부에서 영사관 경비를 송금하였지만 점차 경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진화교에게 그 부담을 주었고, 결국 1932년 5월 (원산부영사관의 지휘를 받는) 판사처로 개조하되, 대외적으로는 영사관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64] 앞서 언급한 1934년 5월 24일자 참사관 정소급이, 영사관이 아니라 원산부영사관의 지휘를 받는 판사처가 설치되었을 뿐이라는 답변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제시한 새로운 교환조건은 무엇일까. 1934년 10월 25일자 아세아국에서 작성한 문건을 살펴보면 다음 두가지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일본측에서 청진영사관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조남, 모아산을 대신하여 해주(海州), 오주(梧州) 등지의 개관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청진영사관 승인을 미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측이 청진 주재 중국영사관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청진판사처를 원산 등으로 철수한 뒤 재차 청진 개관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만주국과의 관계에서 보아도 중국측과의 교섭은 사실상 매우 요원한 문제이다.[65] 정리하자면 일본측은 해주, 오주 등지의 개관을 요구하면서 청진 개관을 미루거나, 아니면 청진판사처를 철수하고 그 뒤 재차 개관 문제를 논의하되 만주국과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교섭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위의 문건에서 언급한 만주국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주지하듯이 만주국은 조선, 대만, 일본 등지에 영사관을 설치하고자 했다. 청진도 그 중 한 곳이다.[66] 마영발은 1934년 5월 30일자 문건에서 만주국 청진영사관 설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청진영사관 개관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7]

만주국영사관 설치에 관한 문건(1934.10.25)에 의하면, 만주국이 청진에 명예영사관 설치를 요청했지만 "청진에서는 아직 어떤 나라의 영사관도 개설되지 않았기에 만주국영사관 개설에 관해서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의향을 확실히 회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8] 청진에 만주국영사관 개설을 승인하게 되면 제3국의 영사관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은 외무대신이 만주국에 전달한 문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69]

이후 1934년 12월 5일자 아세아국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만주국 성립 이후 청진영사관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산에 중국부영사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진의 화교수와 무역상황에 비추어 청진에 영사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일본측의 청진영사관 승인과 동시에 중국측도 해주(連雲港 포함)에 일본영사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청진영사관원 곧, 판사처 인원을 원산으로 돌려보내고 정식으로 개관 승인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70]

---

64) 척무차관→외무차관, 1933.05.09., 管企 第69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75~576쪽.

65) "在清津滿洲國名譽領事設置ト在清津支那領事館新設問題トノ關係", 1934.10.25.(亞細亞局 第1課),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94~598쪽.

66) 만주국은 식민지조선의 중요 지역에 영사관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1934년 10월 신의주에 영사관, 1937년 4월 경성에 명예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황영원,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327~338쪽.

67) 署駐清津領事 겸 원산부영사→외교부장, 1934.05.30.,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2), 6~8쪽.

68) "本邦ニ滿洲國領事館設置方ニ関スル件", 1934.10.25.(작성자 불명),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589~591쪽.

69) 외무대신→在滿臨時代理公使, 1934.12.13., 亞3 機密 第974號,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603~604쪽.

이상 일본측은 청진의 교환조건으로 해주를 제시하고 청진판사처 인원의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측 문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935년 이후 중일관계는 점차 회복되어 중일 양국은 1935년 5월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중화민국정부는 5월 13일 기존의 주일공사 장작빈(蔣作賓)을 초대 주일대사로 임명하였다.[71] 마영발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1935년 5월 10일자 마영발이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 의하면, 4월 29일 일본 천장절(天長節, 일본천황 탄신일)에 수습영사 손병건이 청진부윤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하여 빈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청진 지방당국은 영사관을 실제로 승인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이 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중일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재차 요청하였다.[72]

주일대사 장작빈은 6월 17일자 보고에서 청진영사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에 의하면, 청진 현안을 빨리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시종 조선군의 반대를 핑계로 삼으면서 허가하지 않았다. 만주국, 러시아에서도 청진에 영사관 설치를 요구했지만 역시 조선군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측은 청진영사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 별도의 개항장 예컨대 귀양(貴陽), 영하(寧夏), 라사(拉薩), 온주(溫州), 창려(昌黎) 등지에 영사관 설립을 요구하였다.[73] 주일공사의 보고에서는 일본측이 제시한 해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청진영사관 설치를 미루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청진 현안은 1936년 7월 조선군이 주도한 청진영사관 습격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선군은 영사관원이 소련과 내통하여 비합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군사첩보 수집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소련과 내통의 증거는 불충분하였다.[74] 반면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과 영사관원은 일상적으로 첩보활동에 종사하였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미치지 못했다.[75] 중국은 영사관원 석방을 위해 일본과 교섭할 당시, 일본이 중국 각지에 설립한 특무기관(혹은 분관 출장소) 등은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리상으로 애매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76] 1935년 이후 중일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1936년 7월 시점 식민지조선에서 이미 파국의 길로 가고 있었다.

---

70) "在淸津支那領事館ニ関スル件" 1934.12.05.(亞細亞局 第1課), 「淸津へ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 601~602쪽.

71) 日本國際政治學會・太平洋戰爭原因硏究會編, 『太平洋戰爭への道』 第3卷(日中戰爭 上), 東京: 朝日新聞社, 1962, 90~91쪽.

72) 署駐淸津領事 겸 원산부영사→외교부장, 1935.05.10.,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2), 22쪽.

73) 駐日本國特命全權大使→외교부장, 1935,06.17,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2), 25~26쪽.

74) 陳群元, 「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1), 2008, 7쪽.

75) 馬國福, 「日本特務機關在鄭州的間諜活動(下)」, 『河南法制報』, 2016.01.07., http://newpaper.dahe.cn/jrab/html/2016-01/07/content_1352679.htm?div=-1(검색일 : 2017.09.22)

76) 외교부→주경성총영사관 1936.07.23.,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 39쪽; 외교부→주일본대사관,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 40쪽; 주일대사→외교부, 1936.07.24.,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 41쪽; '駐京城總領事范漢生會晤朝鮮軍憲兵司令官持永淺治氏談話記錄', 1936.07.22., 「駐淸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 119쪽.

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당안관 소장 문건을 활용하여, 식민지조선 주재 중화민국 청진영사관 설립 경위와 그 이후 중일 간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조선 영사관 조직 변화의 관점에서, 청진영사관 신설은 인천영사관 철폐와 연관되었다. 중화민국정부는 한성에 총영사관, 인천과 부산 및 신의주에 영사관, 진남포와 원산에 부영사관을 설치하였지만, 1927년 영사관 경비의 부족을 이유로 진남포부영사관을 한성총영사관 휘하의 판사처(출장소)로 개조하였다.

1930년 6월에는 인천의 영사관을 철폐하고 청진에 영사관을 신설하였다. 이 논의는 1929년 8월 중국측이 일본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촉발되었다. 일본은 조선군의 의견에 의거하여 청진영사관 설치를 군사상의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청진영사관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요녕성 모아산과 조남, 하남성 정주 등 3곳 영사관 개설을 요구하였다. 중화민국정부는 인천영사관을 조선총영사관의 지휘를 받는 판사처로 개조하고, 1930년 6월 1일 청진영사관 설립을 강행하였다. 영사 마영발을 비롯하여 외교관원은 청진에 도착하여 관무를 개시하였지만, 일본은 영사관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정부의 재외 영사관 설치 과정에서, 대만영사관 개관 역시 청진영사관 신설과 관련되었다. 북양정부는 대만화교의 숙원사업인 대만영사관 개설을 위해 일본과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일본측은 대만영사관 설치의 교환조건으로 모아산영사분관 개관을 주장하였지만 이후 정국의 혼란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남경국민정부는 처음에는 대만의 대북, 대중, 대남 영사관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일본측은 기존의 모아산 외에 조남과 정주 3곳의 영사관 개관을 교환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중국측은 대북, 대남 외에 청진영사관 설치를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일본측이 요구한 영사관 3곳 중에서 정주는 승인하되, 조남은 유예하고, 모아산은 불허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1930년 말 중국측은 대북, 일본측은 정주를 우선 개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만영사관 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조남영사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교환조건인 청진영사관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로, 만주국의 성립은 청진영사관 설치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교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모아산, 조남이 만주국 경내에 포함되면서 일본영사관은 불필요해졌다. 그러나 일본측은 청진영사관 개설을 별개의 건으로 주장하였고, 중국측은 모아산, 조남 개관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영사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청진영사관 조직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1932년 5월 경비의 부족을 이유로 청진영사관은 원산부영사관의 지휘를 받는 판사처로 개조되었다. 청진영사관 개설이 장기화되자 일본측은 또 다른 교환조건으로 강소성 해주 개관을 요구하였고, 청진판사처를 철수하고 그 뒤 재차 개관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만주국이 청진에 영사관을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청진영사관 개관에 영향에 주었다. 일본은 청진에 만주국

영사관 설치를 승인하면 제3국의 영사관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주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1935년 이후 중일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중화민국정부는 청진영사관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일본은 조선군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측은 청진영사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하였지만 조선군은 처음부터 불허의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외교당국은 처음에는 중국 내 일본영사관 설립을 교환조건으로 제시하였지만 만주국 성립 이후 조선군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1930년 6월부터 6년 여 끌어온 청진 현안은 중일 양국의 외교 교섭이 아니라 조선군의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조선군은 영사관원이 소련과 내통하여 군사첩보 수집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청진 사건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청진영사관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였음은 물론이다. 중국측은 조선, 만주, 러시아 삼국의 요충지로서 청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교 보호를 명분으로 영사관 설치를 강행하였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청진화교의 위상과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자료〉

外交部檔案,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駐臺灣・日本・朝鮮(韓國)領館設廢案」(1~2) (11-29-01-02-285)

「日本在華設領事」(11-29-01-02-081)

「劃定駐日本・朝鮮(韓國)・各領館轄區範圍案」(11-29-01-02-269)

「駐清津領館館員被日方逮捕」(11-01-03-05-01-023)

『駐朝鮮使館檔』,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소장

「使館人事案」(1915)(03-47-029-01)

「各館人事」(1930)(03-47-194-03)

「鎭南浦仁川領事館人事」(1930)(03-47-194-05)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清津ヘ支那領事館設置ニ関スル件」(M-1-5-0-3-8-001)

朝鮮總督府外事課文書, 한국국가기록원 소장

「自稱淸津中國領事館檢索關係」(CJA0002343)

「各國領事館往復」(中華民國領事館)(CJA0002323)

朝鮮總督府 編,『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各年.

馬國福,「日本特務機關在鄭州的間諜活動(上)」,『河南法制報』, 2016.01.06,http://newpaper.dahe.cn/jrab/html/2016-01/06/content_1352201.htm?div=-1(검색일 : 2017.09.22)

馬國福,「日本特務機關在鄭州的間諜活動(下)」,『河南法制報』, 2016.01.07., http://newpaper.dahe.cn/jrab/html/2016-01/07/content_1352679.htm?div=-1(검색일 : 2017.09.22)

〈연구논저〉

김지환,「간도협약과 일본의 길회철도 부설」,『중국사연구』34, 중국사학회, 2005.

강진아,「만주사변 전후 재한화교 문제의 양상-조선총독부외사과와 재한 중국영사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120, 동양사학회, 2012.

송규진,「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종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나진, 웅기, 청진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57, 한국사학회, 2014.

이은상,「중일전쟁 이전 시기(1912~1936) 조선의 원산화교」,『인문과학』60,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6.

이은자,「중화민국 전기(1912~1927) 주조선 영사관 조직-인적 구성의 측면을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66,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5.

황영원,「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동북아역사논총』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許雪姬,「日據時期的中華民國臺北總領事館, 1931~1937」,『日據時期臺灣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臺北: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 1993.

宋謙,「鐵路與鄭州城市的興起(1904~1954)」, 河南: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譚小妮,「1927年臨江拒日設領鬪爭研究」, 長春: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日本國際政治學會・太平洋戰爭原因研究會編,『太平洋戰爭への道』第3卷(日中戰爭 上), 東京: 朝日新聞社, 1962.

陳群元,「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1),『政治經濟史學』506,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2008.

陳群元,「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2),『政治經濟史學』510,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2009.

陳群元,「1936年日中淸津事件の探究」(3),『政治經濟史學』511,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2009.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2017년 12월 14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1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월 22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Opening of the Consulate in Cheongjin, Colonial Joseon in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Lee, Eunsang*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hinese Consulate in Cheongjin and also that of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The Consulate of Republic of China in Chongjin has jurisdiction over Hamgyeongbukdo as a northern part of the Colonial Joseon was opened in June 1930. However, since Japan did not officially recognize it, long-term negotiations continued over the approval of the consulate in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the followings.

Firstly, in terms of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Chinese consulates in Colonial Joseon, It was associated with the abolition of that in Incheon. However, based on the military opinion of the Colonial Joseon, Japan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at, and proposed the opening of the three Japanese consulates in Maoershan, Taonan and Zhengzhou as a exchange condition.

Secondly,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overseas consulates of China, It was associated with the opening of the consulate in Taiwan. The Beiyang Government negotiated with Japan to set up that in Taiwan, but the negotiation was failed.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asserted the opening of that in Taibei, Tainan and Chongjin in response to Japan's claiming of establishing the three consulates mentioned above. Finally, in late 1930, the issue of Taiwan was resolved as a result of negotiations that China agreed to opening of Japanese consulate in Zhengzhou.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influenced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approval of that. It was unnecessary for a Japanese consulate to establish because Maoershan and Taonan were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Manchukuo. Japan delayed the approval of that, demanding Japanese consulate in Haizhou as another exchange condition. Japan did not allow Manchukuo to open a consulate in Chongjin. If the request is permitted, it would be impossible to refuse to open a consulate in a third country. Since 1935, Sino-Japanese relations

*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ave been gradually recovering, but Japan has still refused approval of that,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the Joseon military. The issue of Chungjin arguing over six years was solved not by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by the power of the Joseon military.

[Key Words] the Chinese Consulate in Cheongjin, the Chinese Consulate in Incheon, the Chinese Consulate in Taiwan, Maoershan, Taonan, Zhengzhou, Manchukuo, Republic of China